
「국내 다큐멘터리 해외진출
지원사업(K-DOCS) 운영」 용역

제 안 요 청 서

2024. 2.



방송미디어본부 방송콘텐츠진흥팀

<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>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, 공정한 거래.상생문화를 정착·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.

- (1)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·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.
- (2)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, 사업기간 연장,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,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3) 사업의 특성,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'간접비'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4)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5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, 민원해결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6) 천재지변,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7)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·자료·물건 등의 소유·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8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,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9)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, 분쟁조정신청,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0) 계약해제·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,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,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1)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- (12)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,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,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,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또는,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,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,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,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3)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.
- (14)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15)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.
- (16)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,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,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<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>
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계약서 교부의무, ▲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, ▲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부당한 거래조건(특약) 설정, ▲하도급대금 부당 결정·감액, ▲부당한 위탁취소, ▲부당 반품, ▲기술자료 부당 요구, ▲기술유용, ▲경영간섭, ▲보복행위 등

- (17)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·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,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(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)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.
- (18)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·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 기타사항>

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(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-307, 2018.8.31.)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·보호의무를 준수하고,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.

목 차

I . 사업 개요	1
II . 제안요청내용	3
III .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	13
IV . 입찰안내	20
V . 별지서식	21

1. 사업명 : 국내 다큐멘터리 해외진출 지원사업(K-DOCS) 운영
2. 사업금액 : 금369,430,000원(금삼억육천구백사십삼만원)/부가가치세 포함
3.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(토)
4.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창의적인 기획안 발굴과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다큐플랫폼 구축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품질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
- 고퀄리티 콘텐츠 기획·제작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작 환경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게 해외시장의 진출 기회 제공 필요
- 긴급입찰 사유
 - 공모를 통한 지원작 선정, 역량강화 교육, 국내외 다큐멘터리 투자설명회 등 전반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긴급입찰 요청
 - 해외 강사 섭외, 디시전메이커, 해외행사 사무국 등 해외와 잣은 접촉을 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, 현지행사의 진행 일정 감안 등 제안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추진하고자 함
 - 또한, 내수·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계약 법령 특례 연장 등의 정부 기조 및 국가 예산 근기 집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긴급입찰 진행

5. 추진 목적

-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·제작·투자유통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K-DOCS의 운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다큐멘터리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진출 활성화

6. 주요내용 : 세부내용은 「II.제안요청내용」 참조

- (K-DOCS 사무국) 전체 사업의 운영·관리를 위해 기획 총괄 PM 및 책임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사무국 운영
- (K-DOCS 운영위원회)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(지원작 공모·선정) 고품질 다큐멘터리 발굴·육성을 위한 K-Pitch Fresh(기획단계), K-Pitch Prime(제작단계) 공모 및 지원작 선정
- (역량강화 교육) 국내외 투자설명회에 대비하여 기획·제작·피칭전략·비즈니스 영어 등 분야별 해외 전문가들의 1:1 맞춤형 멘토링
- (K-DOCS 국내 투자설명회) 국내외 제작사,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및 투자 상담 등을 위한 국내 인더스트리 프로그램 운영
- (해외 투자설명회) IDFA(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) 등 해외 다큐멘터리 인더스트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해외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공동제작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추진
- (홍보) K-DOCS 사업 및 행사 관련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추진 및 K-DOCS 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사업 공지 및 공모 접수 등
- (방송 송출) 선정 사업자의 완성작의 방송 송출 지원 등

II | 제안 요청 내용

1. 제안 요청 사항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국내 다큐멘터리 해외진출 지원사업(K-DOCS) 운영
 - 사업금액 : 금369,430,000원(금삼억육천구백사십삼만원)/부가가치세 포함
 -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(토)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국내 다큐멘터리 기획개발→제작→투자유치→유통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다큐멘터리 통합 지원 플랫폼 운영하여 방송콘텐츠의 품질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
※ 다큐멘터리의 공영방송 정규편성을 통해 장르의 대중화 및 인지도 제고에 성공한 미국 PBS(Public Broadcasting Service) 방송국의 전주기 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
- 고퀄리티 콘텐츠 기획·제작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작 환경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게 해외시장의 진출 기회 제공 필요

□ 사업목표

- 창의적이고 우수한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국내외 보급하여 시청자 복지 증진 및 국내 다큐멘터리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
-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한 국내 다큐멘터리 콘텐츠의 노출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내 다큐멘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

□ 주요 과업내용

① K-DOCS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
○ K-DOCS 사무국

- 기획 총괄 PM 및 책임자 등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총괄 PM은 현재 방송국 재직 중으로 송출 편성 권한이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함
- 제안서에 인력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, 추가 인력 투입 및 기존 인력 변경 등에 관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

○ K-DOCS 운영위원회

- 다큐멘터리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
-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(4회 내외)

② K-DOCS 지원작 공모 및 선정

○ K-Pitch Fresh(기획단계) 및 K-Pitch Prime(제작단계) 공모

- 공모 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 및 계획 수립
- K-DOCS 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공모 접수 및 문의 응대
- 유관기관 홍보 및 공모 응모 사업자들 개별 안내 및 발표자료 관리

○ 지원작 선정

-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준비 등 제반사항
-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작 선정(Fresh 11편, Prime 6편) 및 선정 결과 공지

③ 역량강화 교육(2회 이상)

○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 수립

- 국내 다큐멘터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획·연출·제작·편집 및 피칭전략, 비즈니스 영어 등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구성
- 분야별 강의 및 각 사업자별 1:1 맞춤형 강의 진행
※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용역사와의 협의 및 제안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강사 섭외

- 국내 방송사업자와 업무 경험이 있고 국내 다큐멘터리 산업에 이해도가 있는 분야별 해외 다큐멘터리 방송 전문가* 강사 2인 이상 섭외
* 국내외 인지도가 있으며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

④ 국내 다큐멘터리 투자설명회

○ 국내 다큐멘터리 투자설명회 계획 수립

- (심사평가위원회 구성) 투자설명회 참가 국내외 다큐멘터리 제작사, 방송사업자 등 다큐멘터리·방송전문 디시전메이커들로 구성(10인 내외)
※ 공중파 방송사·OTT 플랫폼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디시전메이커 구성

○ 투자설명회 및 시상식 개최

- (투자설명회)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투자설명회 운영 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행사 장소·관련 시설 장비 등 임차구성
 - 모든 피칭은 영어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통역요원 배치
 - 사업자의 작품 발표 시 희망자에 한하여 사전 녹음 및 재생 지원
- (환영 리셉션) K-DOCS 인더스트리 투자설명회 참가 국내외 사업자 및 K-DOCS 선정 사업자 등 대상 환영 리셉션 개최

- (시상식) K-Pitch Fresh, K-Pitch Prime 시상식 운영
 - 행사 진행자 및 현장 운영 요원 섭외
 - 진행자는 유사 다큐멘터리 관련 행사 진행 경험 보유자여야 함
 - 행사장 다과 준비, 참가자 리스트 관리 및 안내
 - 안전사고 대책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마련

⑤ 해외 다큐멘터리 투자설명회(IDFA 등 해외 다큐멘터리 행사 연계)

○ 해외 투자설명회 세부계획 수립

- IDFA 등 해외 다큐멘터리 행사 사무국과 직접 연락망을 구축하여 행사 전체 일정 및 세부계획 수립
 - 행사 참가 사업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계획 수립
 - 현지 워크숍 강사, 투자설명회 사회자(모더레이터) 섭외
 - 현지 참가 디시전메이커(해외투자사) 섭외
- 해외 현지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수립
-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 사업자에 대한 체재비(항공·숙박 등) 지원 및 가이드북 등을 통해 행사 프로그램 일정 안내 등 참가자 관리

○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

- 주요 프로그램(안)

구분	주요내용	참석대상	일정
해외 투자설명회 (Korea Pitching Day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(목적) 국내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해외 투자사 등에게 직접 소개하여 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▶(내용) 유럽·북미 등 해외 방송사·투자사·배급사 대상 K-DOCS 지원작에 대한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	국내 참가 사업자, 해외 투자사 등	1일 이상
투자 상담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(목적) 행사 참가 해외 방송사·투자사·배급사와 국내 참가 사업자 간 투자 상담 기회 제공 ▶(내용) 국내 참가 사업자와 투자사와의 1:1 투자 상담회 개최 	국내 참가 사업자, 해외 투자사 등	1일 이상

※ 행사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

- 각 프로그램별 회의록 작성(원문과 한국어 번역본 함께 제출)
- 투자 상담회 개최 후 국내 참가 사업자의 결과 수렴하여 최종 결과 보고서에 반영

⑥ K-DOCS 홍보

○ 홍보 계획 수립

- K-DOCS 전체 사업에 대한 단계별·대상별·지역별·매체별 체계적인 홍보계획 수립
- 각 프로그램별 3개월 전부터 일정별 세부 홍보계획 수립

○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

- 홍보이슈 발굴 및 보도자료 작성, 언론보도 관련 기자·미디어 대응
- 보도자료·기획기사 등 홍보 추진 시 발주기관의 협의 후 진행
- K-DOCS 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사업 홍보 등 추진

○ K-DOCS 전반 기록 관리

- K-DOCS 준비, 진행, 종료까지 전 과정 촬영·녹화·편집
※ 제안사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영상을 제안 및 행사 스케치, 인서트, 인터뷰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
※ 출연진 등 제작관련 주요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
- 주요 장면에 대한 기록 사진 촬영

⑦ 예산계획 수립

○ 각 과제별 소요예산 산출

- (지원작 공모) 장소 임차, 심사위원 자문비, 이외 기타 소요비용 등
- (국내 투자설명회) 장소 임차, 국내외 디시전메이커 자문비, 다과비 등

- (해외 투자설명회) 국내 참가 사업자들의 숙박비, 항공료, 참가패스, 여행자 보험 등 지원비, 장소 임차 등
- 이외 전체 프로그램별 운영에 필요한 기타 항목 등

⑧ K-DOCS 지원작 방송 송출

○ 방송 송출 기회 제공

- 선정 사업자의 지원작 완성 시 작품의 인지도 제고 및 다큐멘터리의 대중적인 보급을 위해 방송 송출은 물론 정규시간대 편성 기회 제공이 가능해야 함
- 방송 송출은 작품의 노출 극대화가 가능한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
- 방영 횟수는 선정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1회 이상 진행

○ OTT 플랫폼 서비스

- 지원작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선정 사업자가 희망 시 방송 송출 외 OTT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

□ 추진 일정(안)

구 분	'24년											
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
입찰공고												
용역사 선정												
다큐멘터리 사무국·운영위원회 구성												
K-DOCS 지원작 공고												
지원작 선정												
1차 역량강화 교육												
국내투자설명회 개최												
2차 역량강화 교육												
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및 사업결과 보고												

2. 기타 요청 사항

□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

-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체계, 운영 방안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
 -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,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제안사는 사업책임자 및 세부과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-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
 - 사업책임자(PM)는 본 사업의 참여를 원칙으로 함
 -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, 수행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, 발주기관은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

□ 업무수행 조건

- 제안사는 착수회의 이전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,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참여인력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
- 각 과제별로 진행되는 사업화 전략 수립 경과에 대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, 중간 보고서, 최종보고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 다만 보고서 형태, 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
-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

□ 보안조치

-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,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
-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

□ 기타

-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K-DOCS 종합 기획 및 세부 실행계획 작성, 인적·물적 자원 준비에 착수하여야 함
-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

3. 산출물 제출 및 보고사항

□ 산출물의 제출 및 검토·승인

-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·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
-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(공정)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 및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고 검토·승인을 받아야 함
-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·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
- 용역 종료 전에 최종 보고를 갖도록 하며,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수정작업을 수행하여야 함

○ 산출물 제출

구분	규격	수량	비고
행사 결과보고서	A4	2종, 8부	한글, PPT
행사 사진·영상 등	jpg 등 사진파일 mp4 등 영상파일	8개	앨범, USB
행사 전체 기록	-	1개	USB

※ 모든 산출물의 편집·제작·인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진행

※ 이외 본 과업으로 인해 산출된 결과물 일체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
□ 정기 및 수시보고

○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, 수시보고, 최종보고 등을 수행하여야 함

- 업무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 변경, 계획예산 대비 실행 예산 변경, 참여인력 변경 등 주요내용에 대한 변경 시 즉시 발주 기관에 변경보고를 수행하여야 함

구분	주요 내용	시기	보고방법
착수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수행계획 보고 ○ 사업 수행방안 협의 	계약 후 10일 이내	보고회
중간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대비 일정 변경사항 -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○ 향후 추진 일정 계획 제출 	중간 보고시	보고회
최종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추진결과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프로그램별 회의록 및 녹취록, 참석자 현황, 보도자료 내역 등 정리 제출(외국어 사용 시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 함께 제출) ○ 최종성과물 제출(원본 및 편집본 포함) 	계약 종료 10일 전	보고회
수시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	필요시	보고회 or 서면

※ 내용 및 시기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수시회의 지속 개최

4. 유의사항

-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, 사용권 또는 특허, 모든 제작물(이미지, 사진 등)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음
※ 다만,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, 보완,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
-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. 다만, 계약목적물의 특수성(보안, 영업비밀 등)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
- 계약 및 협상 등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계약예규(기획재정부)」 등 관련 규정에 의함

1. 제안서 작성방법

- 제안서 규격 : A4, PDF
-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

-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.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.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.
-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“~할 수도 있다”, “~를 고려하고 있다”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.
- 제안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,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.
- KS, 관련법규, 표준규격 등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.
-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, 제출 완료 후 추가 또는 수정, 변경은 할 수 없다.

□ 제안서 목차 및 구성

○ 제안서 표지에 사업관리자(PM) 연락처(전화번호, e-메일 등) 기재

작성 항목	작성 방법
I. 제안개요 1. 제안 목적 2. 수행범위 3. 제안의 특징 및 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, 범위, 전제조건,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,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
II. 제안사 일반 1. 일반현황 2. 조직 및 인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○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
III. 사업수행부문 1. 개요 2. 추진목표 및 전략 3. 주요 사업내용 4.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. 결과물 제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○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○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○ 제안요청 내용 세부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총괄 및 타 기관과의 연계·협업 방안 제시 • 전반적인 사업 홍보전략 제시 •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방안 등 제시 ○ 사업완료 시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
IV. 사업관리 부문 1. 추진일정 계획 2.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.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.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5. 안전·재난관리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세부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○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, 단계별 검토회의 등 ○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○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주요 이력사항 기재 ○ 사업 수행 시 안전 및 재난관리 계획 제시
V. 결과 활용성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
VI. 첨부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서 이외의 별지서식 자료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

□ 제안서 제출방법 : 입찰공고문 참조

○ 입찰 구비 서류

구분	주요 내용
정량 제안서	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② 용역 수행실적 ③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
정성 제안서	-
제안요약서	※ 발표자료로 활용
기타서류	※ V. 별지서식 참조

2. 제안서 평가기준

□ 낙찰자 결정방식 : 제안평가/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

- 종합평가(100%) = 기술능력평가(80%) + 입찰가격평가(20%)

※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%(68점)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
-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,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. 단, 최저 및 최고점수에 동일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평가점수만 제외
-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,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
-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함
- 입찰가격평가는 「(기재부 계약예규)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 [별표] 주1)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

-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

(1) 정량평가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평가 기준(항목설명)	배점
사업일반 (10)	경영상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평가- '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' [별표 8]에 따름	5
	수행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업수행실적(금액 기준)- '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' [별표 9]에 따름-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(최근 3년 기준) ※ 송출 포함 다큐멘터리 콘텐츠 분야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인더스트리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	5

(2) 정성평가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평가 기준(항목설명)	배점
사업일반 (10)	사업이해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-DOCS 사업의 배경 및 목표 등에 대한 이해도 ○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	5
	미래 지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○ K-DOCS 사업 진행을 통한 장기적인 다큐멘터리 산업의 발전 가능성 	5
기획구성 (15)	창의성 및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-DOCS 사업 제안의 창의성, 독창성, 참신성 	5
	부합성 및 합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부 사업 운영 방안의 타당성 ○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○ 제안요청서의 전략 부합성 및 추진일정의 합리성 	10
사업 구성 및 운영 (15)	사업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타 기관과의 연계·협업을 통한 사업 총괄 운영 방안의 타당성 ○ 작품 선정 및 지원, 역량강화 교육, 국내외 투자 설명회, 작품의 송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운영방안의 적정성 	5
	사업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의 전반적인 홍보 방안의 실현성 및 타당성 ○ 언론홍보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운영방안의 타당성 ○ 기업·학계·관련기관 등의 홍보 방안의 적정성 	5
	네트워크 등 전문성 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역량강화 교육 등 해외 전문가 섭외에 필요한 국내외 네트워크 및 전문성 보유 ○ 국내외로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들의 실무 지원 계획의 타당성 	5
세부추진 계획 (20)	인력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프로젝트 담당 PM의 사업 수행 전문성 및 역량 ○ 참여인력(전담인력 포함) 구성의 효율성 ○ 참여인력의 경력 적합성 및 전담인력 투입의 효율성 	10
	일정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부 추진일정 계획에 따른 세부 목표의 도달성 ○ 사업관리 계획 및 일정관리 능력 ○ 과제별·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	10
안전관리,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(10)	안전·재난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 안전 관리 지침 등을 준용하여 안전 계획 수립하였는지 등의 여부 ○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구체성 	5
	비상대책의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상상황 대비 운영계획 변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방안 제시 ex)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온라인 개최 	3
	협조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협업 기관과의 비상 상황 관련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적정성 ex) 해외 투자설명회 관련 네덜란드 IDFA 등 	2
계			70

※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작성

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[별표 8]

경영상태 평가기준

신용평가등급			평점
회사채	기업어음	기업신용평가등급	
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A1, A2+, A20, A2-, A3+, A30	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배점의 100%
BBB-, BB+, BB0, BB-	A3-, B+, B0	BBB-, BB+, BB0, BB-	배점의 95%
B+, B0, B-	B-	B+, B0, B-	배점의 90%
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	배점의 70%

*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

[주]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,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,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 다만,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.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,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. 다만,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.
- 주 1에도 불구하고,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 다만,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
-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.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「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」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,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. 다만, 제안서 평가일 전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,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)를 제출하여야 한다.(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)
-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,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.
(예) (A사 점수×A사 지분율)+(B사 점수×B사 지분율)…
-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

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[별표 9]

수행실적 평가기준

평가등급	평점
100% 이상	배점의 100%
70% 이상 ~ 100% 미만	배점의 90%
40% 이상 ~ 70% 미만	배점의 80%
40% 미만	배점의 70%

- *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(금액 기준)을 합산 적용. 단,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
- * 인정범위 :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(송출 포함 다큐멘터리 콘텐츠 분야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인더스트리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)

[주]

1.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,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.
2.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.
3.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.
4.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, 제안요청서에 정하되,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5.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가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
 - 나.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 실적증명서, 계약서, 세금계산서(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) 등을 첨부하여야 함
 - 다.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
 - 라. 국외의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,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
 - 마.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6.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,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.
(예) $\{(A\text{사 } \text{실적} \times A\text{사 } \text{지분율}) + (B\text{사 } \text{실적} \times B\text{사 } \text{지분율}) \dots\}$ 에 대한 점수
7.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.
8. 합병, 분할,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.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·분할 전·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가. 합병 :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
 - 나. 분할 :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. 다만, 시설,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.
 - 다. 사업양수도 :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. 다만, 시설,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.

3. 제안서 평가

○ 발표방식 : e발주시스템(온라인평가)

- 발표시간 : 총 25분(발표 15분, 질의응답 10분)

※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

○ 유의사항

- 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 관련 일시, 장소, 발표시간은 KCA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입찰마감 후 평가담당자가 개별 통보함
-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동영상 등을 이용한 발표는 불허(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평가)
- 제안서 발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

4. 제안 관련 문의

○ 사업관련

- 최혜인(방송미디어본부 방송콘텐츠진흥팀)
- 연락처 : T. 061-350-1406 / E-mail. hyein720@kca.kr

○ 평가관련

- 박민건(안전경영지원단 재무회계팀)
- 연락처 : T. 061-350-1373 / E-mail. mingunp@kca.kr

1. 입찰방식 : 중앙조달, 일반 경쟁입찰

2. 입찰참가자격
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(G2B)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「전파법」 제34조에 따라 방송국(지상파방송국, 6148) 또는 「방송법」 제9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(6436)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27조의5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12조 제3항에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· 해지를 당할 수 있고,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다만,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(가격입찰서)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.)
- 공동수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

V

별지서식

[별지 제1호] 정보 비공개 동의서

[별지 제2호] 일반현황 및 연혁

[별지 제3호]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

[별지 제4호] 총괄책임자 이력사항

[별지 제5호] 수행실적 총괄표

[별지 제6호] 수행실적증명서

정보 비공개 동의서

회사명 :

주소(소재지) :

성명(대표자) :

본인은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'국내 다큐멘터리 해외진출 지원 사업(K-DOCS) 운영'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상호 :

대표자 : (인)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일반현황 및 연혁

회사명			
대표자		전화번호(대표)	
주소			
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			
설립년도		사업분야	
해당분야 종사기간			
주요연혁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참여인력 현황 총괄표(제출일 기준)

번호	성명	담당업무	해당분야 근무경력	참여율	비고

*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

[별지 제4호 서식]

총괄책임자 이력사항

성명			연령	만 세
연락처	전화번호		팩스번호	
	휴대전화		전자우편	
소속 및 직위				
본 과업에서의 역할				

경력

사업명	참여기간 (년월 ~ 년월)	담당업무	발주처	비고

[별지 제5호 서식]

수행실적 총괄표

일련 번호	사업명	발주처	계약금액 (천원)	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	비고

주)

-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(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)
-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

[별지 제6호 서식]

수행실적증명서							
신청인	업체명			대 표 자			
	영업소재지			전화번호			
	사업자번호			법인등록번호			
	증명서 용도	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		제 출 처			
수행실적 내용	사업명			구 분	소프트웨어개발 () 유지관리 · 운영위탁() 컨설팅 () 기타 ()		
	사업개요						
	계약번호	계약일자	계약기간	계약금액 (VAT 포함)	수행 또는 납품실적		
					완료일자	지분율(%)	실적(원)
증명서 발급기관	위 사실을 증명함.						
							년 월 일
	기관명: (인) (전화번호:)						
	주 소:						
발급부서:	담당자 :		(전화번호:)				

[주]

-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(기성 포함)된 실적이어야 하며,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
-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,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
-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,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
-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